



Supplemental Security Income (SSI)

SSI 혜택에 대한 이해: 외국인을 위한 생활보조금(SSI)

2008년 판



어떤 경우에 외국인이 생활보조금(SSI)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외국인이라도 1996년 8월 22일부터 시행된 비시민권자에 대한 법률의 요건에 충족한 남녀의 경우, 생활보조금(SSI)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996년 8월 22일부터는 대부분의 외국인은 반드시 두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잠재적으로 SSI 혜택 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 ▶ **자격있는 외국인** 범주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 ▶ 자격있는 외국인은 SSI 혜택을 받기 위한 **조건**에 맞아야 합니다.

중요: 외국인은 **소득** 한도액을 포함하여 **자산** 기타 **SSI 혜택 자격**에 필요한 모든 규정에 충족해야 합니다.

자격있는 외국인이란 누구입니까?

자격있는 외국인의 범주는 8가지가 있습니다. 다음 중 귀하께서 한범주에 속한다고 미국토안보부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DHS)에서 인정하는 경우에 귀하는 **자격있는 외국인**입니다.

- ▶ 1988년 제정되고 이후 개정된 “외국 기업, 수출 금융 및 관련 프로그램의 사용에 관한 법(Foreign Operations, Export Financing and Related Programs Appropriations Act)”의 제584항에 정의된 “아시아계 미국인 혼혈 이민자”를 포함하는 합법적 영주권자 (Lawfully admitted for Permanent Residence: LAPR)
- ▶ 1980년 4월 1일 이전에 시행된 이민 및 국적법(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INA)의 제203(a)(7)항에 따라 조건부 입국이 허용된 자
- ▶ INA의 제212(d)(5)항에 따라 최소한 1년간 미국으로의 일시적 입국을 허락받은 자
- ▶ INA의 제207항에 따라 미국으로의 입국이 허용된 난민
- ▶ INA의 제 208항에 따라 망명이 허용된 자
- ▶ 1997년 4월 1일 이전에 시행된 INA의 제243(h)항에 따라 국외 추방이 보류중이거나, INA의 제241(b)(3)항에 따라 강제 이주가 보류된 자
- ▶ 1980년 제정된 난민 교육 지원법의 제501(e)항에 따라 “쿠바 및 하이티 입국자”로 분류되는 자 또는 SSI의 취지상 “쿠바/하이티 입국자”로 취급되는 지위에 있는 자

특정 상황에서, 귀하와 자녀, 부모가 미국에 거주하는 동안 구타 또는 극심한 폭력에 처한 경우

어떤 상황에서 자격있는 외국인이 생활보조금(SSI)을 받을 수 있습니까?

위에 열거한 8가지의 **자격있는 외국인** 범주 중 한가지에 속하는 경우 또한 다음 아래의 조건 중 한 가지에 속해도, 귀하는 생활보조금(SSI)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1. 귀하가 1996년 8월 22일에 SSI 혜택을 받고 있었고, **및** 현재 미국에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
2. 귀하가 합법적 영주권자 LAPR이며 근로 활동 이력이 40 크레딧을 채운 경우

- ▶ 귀하의 배우자나 부모의 근로 활동도 근로 활동 이력 40 크레딧 계산에 반영될 수 있지만, SSI 혜택 자격을 판정할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 ▶ 1996년 12월 31일 이후 귀하가 획득한 근로 활동 크레딧 이력은 귀하, 배우자 또는 부모가 해당 기간 동안 근로 활동에 종사했고, 제한된 **소득**과 **자산**을 근거로 미 정부로부터 일정한 혜택을 받은 경우, 계산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중요: 귀하가 1996년 8월 22일 이후에 처음으로 미국에 입국하였고, 근로 활동으로 40 크레딧 있는 합법적인 영주권자라도, 처음 5년간은 LPRSSI 혜택을 가질 수 없습니다.

3. 귀하가 현재 현역 미군으로 복무중이거나, 또는 명예 제대를 한 군인이며 전역 사유가 외국인 신분 때문이 아닌 경우. 이러한 조건은 귀하가 특정 미군의 배우자, 유족 배우자 또는 피부양 자녀인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4. 귀하가 1996년 8월 22일 당시 미국에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있었으며, **및** 현재 시각 장애나 다른 장애가 있는 경우
5. 귀하가 SSI 급여를 신청한 이후 **7년** 이내에 국토안보부 (DHS)에서 귀하에게 다음 각 범주 중 하나에 해당하는 지위를 허락한 경우, 귀하는 허락이 내려진 날로부터 최대 **7년**간 SSI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이민 및 국적법(INA)의 제207항에 명시된 난민
- ▶ INA의 제208항에 명시된 망명자
- ▶ INA의 제243(h)항에 따라 국외 추방이 보류되었거나 INA의 제241(b)(3)항에 따라 강제 이주가 보류된 외국인
- ▶ 1980년 제정된 난민 교육 지원법의 제501(e)항에 따라 “ 쿠바 및 하이티 입국자 ”로 분류되는 자 또는 SSI의 취지상 “ 쿠바/하이티 입국자 ”로 취급되는 지위에 있는 자
- ▶ 1988년 제정되고 이후 개정된 외국 기업, 수출 금융 및 관련 프로그램 사용에 관한 법의 제584항에 명시된 “ 아시아계 미국인 혼혈 이민자 ”

중요: 귀하가 이러한 범주 중 하나에 해당되고, 또한 상기 (1-4) 열거된 조건 중 한 가지를 충족하는 경우, 귀하는 7년이 넘어도 생활보조금(SSI) 받을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특정 인디언 비시민권자를 위한 1996년 8월 26일 제정 법률의 면제 조항

- ▶ 특정 범주에 속하는 비시민권자의 경우 생활보조금(SSI) 받을 자격을 있으며, 1996년 8월 26일 제정된 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이러한 범주에 속하는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
- ▶ 캐나다에서 출생하여 INA의 제289항에 따라 미국에서 거주하는 미국계 인디언 인디언 자결권 및 교육 지원법의 제4(e)항에 따라 연방정부가 인정한 인디언 부족에 속한 비시민권자

추가 자격있는 외국인 범주

미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 [Office of Refugee Resettlement](#) 보건복지부에서 귀하가 2000년 제정된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법(Trafficking Victims Protection Act)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정한 경우, 귀하는 특정 상황에서 생활보조금(SSI) 받을 자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민 지위 증명 자료가 필요합니다

귀하가 SSI 혜택을 신청하는 경우, 반드시 현재 유효한 국토안보부(DHS) 이민 양식 1-94, DHS 양식 1-551 또는 국외 추방을 보류하거나 망명을 허락한 이민담당 관사의 명령서 등, 이민 지위에 대한 증명 서류를 저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귀하가 미군으로서 복무한 경력이 있다면, 저희에게 귀하의 명예 제대 사실을 보여줄 수 있는 미군 전역 서류 (DD 양식 214)와 같은 군 복무 증거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거주하는 지역의 사회보장사무소에서 외국인 지위를 증명하기 위해 제출할 수 있는 다른 증거 자료의 종류를 알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후원자가 있을 경우?

미국 입국 당시 귀하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내용의 계약서에 서명해 준 사람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계약서를 재정 보증서라고 하고, 재정 보증서에 서명한 사람을 후원자라고 부릅니다. 귀하에게 후원자가 있는 경우, 저희는 일반적으로 후원자(및 후원자의 배우자)의 소득과 자산을 귀하의 소득과 자산으로 계산합니다.

귀하가 거주하는 지역의 사회보장사무소에서는 이러한 규정과 귀하에게 규정이 적용되는 방식에 대해 더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 되기

시민권자가 되는 방법에 더 자세한 정보나 신청서 양식(양식 N-400)이 필요하실 경우, 지역 DHS 사무소에 서신을 보내거나 직접 방문을 통해, 또는 전화 1-800-870-3676으로 문의하십시오.